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92호 2016. 7. 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6-55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 정선군 고시 제2016-56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 26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6-546호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공람·공고 2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6-55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정선군고시 제2016-25호(2016.4.15.) 및 강원도고시 제2016-150호(2016.4.29.)로 결정된 ‘2020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고한·사북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5개소)을 결정(변경)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7월 1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2020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됨에 따라, 고한·사북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소에 대한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 시행지침 등을 변경 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사북읍, 북평면 남평리, 여량면 구절리, 화암면 화암리, 사북읍 직전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라.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마.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I. 고한·사북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44-2대 일원	97,466	감)687	96,779	강고 제77호 (02.4.8)	
폐지	4	사북리4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48 일원	24,250	감)24,250	-	강고 제300호 (03.12.1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 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변경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 A : 97,466 → 96,779㎡ (감 687)	◦ 지장천 하천구역을 포함하여 결정된 지구 단위계획구역 정정 반영
폐지	4	사북리4 지구단위계획구역	◦ 폐지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2005.12.08)에 따른 주택 등 기존 건축물 철거 지역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66,745	감) 24,937	541,808	100.0	
주거 지역	소계	148,454	감) 24,250	124,204	22.9	
	제1종일반주거지역	24,250	감) 24,25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4,204	감) 9,547	114,657	21.2	
	준주거지역	-	증) 9,547	9,547	1.8	
상업 지역	소계	418,291	감) 687	417,604	77.1	
	일반상업지역	418,291	감) 687	417,604	77.1	

2) 구역별 용도지역 현황

구 분		계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97,466	-	-	-	97,466
	변경	96,779	-	-	-	96,779
사북리4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24,250	24,250	-	-	-
	변경	-	-	-	-	-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62,250	-	26,587	-	35,663
	변경	62,250	-	17,040	9,547	35,663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36	4	국지 도로	166	중로 2-4 사북리 356-27	중로 2-4 사북리356-119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소로 3-36	◦ 도로신설 - L=166m, B=4m	◦ 골목길로 이용중인 현황을 고려하여 맹지해 소 및 차량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나)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513	중로 3-1 사북리 452-50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 도로	사북 시장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389	중로 3-2 사북리 452-75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 도로	사북 시장	강고26호 (79.2.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소로 1-3	소로 1-3	◦ 노선축소 - L = 513m → 389m (감 124m)	◦ 급경사 지형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중로3-1 접속 구간의 노선 축소

다)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1	14	국지 도로	336	중로 3-2 사북리 452천	중로 3-2 사북리 372-11도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336	중로 3-2 사북리 452천	중로 3-2 사북리 372-11도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89 (157)	중로 3-2 사북리 307-28대	소로 1-3 사북리 452천	일반 도로	사북 초교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2	51	8	국지 도로	144	중로 3-2 사북리 307-28대	소로 3-4 사북리 307-1도	일반 도로	-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454 (64)	소로 3-3 사북리 307-1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사북리 산143-11입	일반 도로	사북 초교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499 (82)	소로 3-3 사북리 452천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사북리 산143-11입	일반 도로	-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32	6~7	국지 도로	91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공공공지 사북리 317-252도	일반 도로	사북읍 사무소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3	33	6~7	국지 도로	91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소로 3-29 사북리317-252도	일반 도로	사북읍 사무소	강고26호 (79.2.8)	
신설	소로	3	34	6	국지 도로	63	중로 3-2 사북리 344-55대	소로 1-20 사북리 344-169대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변경	중로 3-11	소로 1-20	◦ 도로변경 - B=14m → 10m, L=336m	◦ 지장천변 하천제방과 중첩되는 부분이 제외되도록 해당노선 폭원 축소
변경	소로 3-3	소로 2-51	◦ 도로변경 - B=6m → 8m, L=144m	◦ 구 사북초교 앞 도로폭원 확장 개설 계획 반영
변경	소로 3-4	소로 3-4	◦ 도로변경 - L=454m → 499m, 증)45m	◦ 구 사북초교 앞 도로폭원 확장 개설에 따른 해당도로 노선 연장
변경	소로 3-32	소로 3-33	◦ 도로변경 - 소로3-32 → 소로3-33	◦ 소로3-32는 고한리 삼봉아파트 진입도로로 기결정(정선고제2012-114호,2012.10.26.)되어 해당노선의 도로번호 변경
신설	-	소로 3-34	◦ 도로신설 - B=6m, L=63m	◦ 기개설된 사북읍사무소 앞 도로 신설 반영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0	구 사북초교 앞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45-1입	-	증)1,773	1,773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신설	21	사북읍사무소 남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36대 일원	-	증)606	606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신설	22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169대 일원	-	증)1,302	1,302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신설	20	구 사북초교 앞 주차장	◦ 신설 - 면적(A) : 1,773㎡	◦ 구 사북초교 앞 지장천변 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신설	21	사북읍사무소 남 주차장	◦ 신설 - 면적(A) : 606㎡	◦ 사북읍사무소 앞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근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
신설	22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 신설 - 면적(A) : 1,302㎡	◦ 사북읍사무소 뒤편 나대지 일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 감소 도모

(3) 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사북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북읍 사북리 344-4학 일원	12,350	감)12,350	-	강고 제109호 (82.8.14)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폐지	1	사북초등학교	· 학교폐지	· 사북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라 2013.3.1.자로 사음초등학교와 통폐합된 후 사북리 270번지 일원으로 이전(2014.7.28.)됨에 따라 종전 부지 폐지

라)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8	15	보조간 선도로	2,925 (304)	3호 광장 고한리 149-2도	고한구역계 고한리 237대	일반 도로	종합 운동장	강고83호 (02.4.15)	
변경	중로	2	8	15	보조간 선도로	213	3호 광장 고한리 149-2도	고한리 273천	일반 도로	고한사북 버스터미널	강고83호 (02.4.15)	
신설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2,712 (91)	중로 2-8 고한리 273천	고한구역계 고한리 237대	일반 도로	종합 운동장	정고제25호 (2016.4.15.)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중로 2-8	중로 2-8	·도로변경 -L=2,925m → 213m, 감) 2,712m	·기개설 도로폭원을 고려하여 도로규모가 축소되는 고토일 주거지역 진입도로구간 제외
신설	-	소로 1-21	·도로신설 - L=2,712, B=10m	·중로2-8에서 폭원이 축소되는 고토일 주거지역 진입도로구간을 소로1류로 신설

마)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4	10	국지 도로	33	소로 1-13 고한리 131-1대	소로 1-2 고한리 산89-1천	일반 도로	지장2교	강고135호 (85.12.19)	
변경	소로	1	14	10	국지 도로	33	소로 1-13 고한리 131-1대	소로 1-2 고한리 산89-1천	일반 도로	지장2교	강고135호 (85.12.19)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 1-14	소로 1-14	◦ 도로변경 - 도로위치 조정	◦ 기존 건축물 고려 해당노선 위치 조 정

바)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52	소로 1-11 고한리274-110도	5호 광장 고한리274-196대	일반 도로	-	정고제25호 (2016.4.19.)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소로 3-35	◦ 도로신설 - B=6m, L=152m	◦ 기개설된 구 고한읍사무소 뒤편 국도38 호선 진입램프 구간 신설 반영

사)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423	소로 1-12 고한리62-169대	중로 2-7 고한리 87-3도	일반 도로	고한 우체국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2	25	8	국지 도로	195	소로 1-12 고한리 62-169대	소로 2-26 고한리 88-1대	일반 도로	고한 우체국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321 (228)	중로 3-8 고한리 91-70도	중로 2-7 고한리104-123대	일반 도로	고한 순복음교회	강고2577호 (73.12.26)	
변경	소로	2	27	8	국지 도로	319 (226)	중로 2-7 고한리104-115도	중로 3-14 고한리 91-70도	일반 도로	-	강고2577호 (73.12.26)	
신설	소로	3	39	6	국지 도로	228	소로 2-25 고한리 88-1대	중로 2-7 고한리 87-2도	일반 도로	고한 파출소	정고제25호 (2016.4.15.)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변경	소로 2-25	소로 2-25	◦ 도로변경 - L=423m → 195m, 감)228m	◦ 고한파출소~고한우체국 구간의 균계획 도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재산상 피해 발생 민원을 고려하여 해당구간을 축소
변경	소로 2-27	소로 2-27	◦ 도로변경 - L=321m → 319m, 감)2m	◦ 해당도로 종점과 연결되는 중로3-14의 개설현황 반영에 따른 연장 감소
신설	-	소로 3-39	◦ 도로신설 - B=6m, L=228m	◦ 소로2-25호선 축소구간을 소로3류로 신설

아)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167	소로 2-24 고한리62-405도	중로 2-7 고한리 97-1대	일반 도로	고한농협	강고2577호 (73.12.26)	
변경	소로	2	23	8	국지 도로	137	소로 2-24 고한리 97-35대	중로 2-7 고한리 97-1대	일반 도로	고한농협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398 (98)	소로 1-12 고한리62-218도	중로 1-4 고한리 274-14대	일반 도로		강고300호 (03.12.13)	
변경	소로	2	24	8	국지 도로	397 (98)	소로 1-12 고한리62-218도	중로 1-4 고한리 274-14대	일반 도로	-	강고300호 (03.12.13)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소로 2-23	소로 2-23	◦ 도로변경 - L=167m → 137m (감 30m)	◦ 소로2-24와의 원활한 접속을 고려한 해당노선의 기점 변경
변경	소로 2-24	소로 2-24	◦ 도로변경 - L=398m → 397m (감 1m)	◦ 소로1-12와의 원활한 접속을 고려한 해당노선의 기점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고한2-2구역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기정	C1	9,002	고한리 127-3번지 일원	9,002	-	
기정	C2	5,558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5,558	-	
기정	C3	600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600	-	
변경	C4	5,510	고한리 125-6번지 일원	4,820	감)690	◦ 도로신설에 의한 블록면적 변경 (소로3-35)
기정	C5	3,740	고한리 120-6번지 일원	3,740	-	
변경	C6	21,611	고한리 106-3번지 일원	16,618	감)4,993	◦ 하이원 행정동 주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블록분할 (C6블록 → C6, C7, C8블록)
신설	C7	-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2,956	증)2,956	
신설	C8	-	고한리 106-3번지 일원	2,037	증)2,037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내용

(1) 건폐율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구)고한초교 주변 (신 설)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 용적률

구 분		용 적 율(%)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고한구역	중심지 형성지역	400 ~ 500	500 ~ 600	고한시장 및 고한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300 ~ 400	350 ~ 550		
	주거지역	기정	150 ~ 200	200 ~ 250	
		변경	150 ~ 300	200 ~ 350	(구)고한초교 주변

(3) 높이

구 분		최고높이(층)	비 고	
고한구역	중심지 형성지역	8 ~ 12층 이하	고한시장 및 고한역세권 주변, (구)고한초교	
	기타 상업지역	8 ~ 10층 이하		
	주거지역	기정	4층 이하	
		변경	4 ~ 7층 이하	(구)고한초교 주변 : 7층 이하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고한2-2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6	고한읍 고한리 104-5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 권장용도 E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4층(12m) 이하, 12층(42m)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C6	고한읍 고한리 104-5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 권장용도 E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C7	고한읍 고한리 10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 폐 율	◦ 70%	
			용 적 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7층(24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C8	고한읍 고한리 104-3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 폐 율	◦ 70%	
			용 적 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7층(24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사북리1구역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4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 보차혼용통로(B=2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 보차혼용통로(B=4m) 폐지 → 소로3류 신설	

(2) 사북리3구역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6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변경			○ 보차혼용통로(B=4m, 3m) ※ 보차혼용통로 일부구간 폐지 → 제22호 주차장 신설	
기정	C7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2m),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 ※ 보차혼용통로(B=2m) 폐지	
기정	C8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2m)	
변경			○ 보차혼용통로(B=4m) ※ 보차혼용통로 일부구간 폐지	

(3) 고한2-1구역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B3	고한리 136-20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 ※ 보차혼용통로 일부구간 폐지	

(4) 고한2-2구역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4	고한리 125-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 보차혼용통로 폐지 → 소로3류 신설	

(5) 고한2-4구역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E1	고한리 62-70번지 일원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변경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보차혼용통로 일부구간 폐지	

7)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가)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사항 (전·후 대비표)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 분	기 정	변 경 후																																				
제1조 (목적)	①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 <u>고한·사북도시계획 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u> '의 민간부문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 <u>고한·사북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u> '의 민간부문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5.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정선군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15.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10조 (권장용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권장용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A</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2호</u>에 의한 위락시설</td> <td>◦전층권장용도</td> </tr> <tr> <td>B</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1호</u>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td> <td>◦전층권장용도</td> </tr> <tr> <td>C</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td> <td>◦1층권장용도</td> </tr> <tr> <td>D</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u>중 - 도·소매시장 - 상점</td> <td>◦전층권장용도</td> </tr> <tr> <td>E</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0호</u> 업무시설</td> <td>◦전층권장용도</td> </tr> </tbody> </table>	구분	권장용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2호</u> 에 의한 위락시설	◦전층권장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1호</u> 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전층권장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1층권장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u>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전층권장용도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0호</u> 업무시설	◦전층권장용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권장용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A</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6호</u>에 의한 위락시설</td> <td>◦전층권장용도</td> </tr> <tr> <td>B</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5호</u>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td> <td>◦전층권장용도</td> </tr> <tr> <td>C</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td> <td>◦1층권장용도</td> </tr> <tr> <td>D</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7호 판매시설</u>중 - 도·소매시장 - 상점</td> <td>◦전층권장용도</td> </tr> <tr> <td>E</td> <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4호</u> 업무시설</td> <td>◦전층권장용도</td> </tr> </tbody> </table>	구분	권장용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6호</u> 에 의한 위락시설	◦전층권장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5호</u> 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전층권장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1층권장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7호 판매시설</u>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전층권장용도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4호</u> 업무시설	◦전층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2호</u> 에 의한 위락시설	◦전층권장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1호</u> 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전층권장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1층권장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u>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전층권장용도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0호</u> 업무시설	◦전층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6호</u> 에 의한 위락시설	◦전층권장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5호</u> 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전층권장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1층권장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7호 판매시설</u>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전층권장용도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제14호</u> 업무시설	◦전층권장용도																																				

구 분	기 정	변 경 후
<p>제11조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p>	<p>② 허용용적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제52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대지에 적용된 기준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진 지침 제38조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의 합이 지정된 허용용적률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p> <p>④ 상한용적률은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해 산출되는 용적률 범위내로 한다.</p>	<p>② 허용용적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제5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대지에 적용된 기준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진 지침 제38조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의 합이 지정된 허용용적률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p> <p>④ 상한용적률은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해 산출되는 용적률 범위내로 한다.</p>
<p>제34조 (특별계획구역)</p>	<p>③ 단, 특별계획구역내 건축은 단일주체에 의한 일괄 개발만 허용한다.</p> <p>■ 특별계획구역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m도로를 계획하여 연계통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 대상지 남측에 접하는 중로3-13호선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내로 폭원 4m의 도시계획도로를 추가 조성하고 추가 확보되는 도시계획도로(B=4m)는 기부채납 	<p>③ 단, 특별계획구역내 건축은 단일주체에 의한 일괄 개발만 허용한다.</p> <p>■ 특별계획구역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m도로를 계획하여 연계통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 대상지 남측에 접하는 중로3-13호선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내로 폭원 4m의 도시계획도로를 추가 조성하고 추가 확보되는 도시계획도로(B=4m)는 기부채납 ·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소 개발부지 면적은 1,00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분	기정	변경 후
제1조 (목적)	①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u>고한·사북도시계획 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u> '의 공공부문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u>고한·사북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u> '의 공공부문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④ <u>고한·사북도시계획구역</u> 지구단위계획 관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용 시행토록 한다.	④ <u>고한·사북도시지역</u> 지구단위계획 관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용 시행토록 한다.
제3조 (지침의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u>도시계획시설중</u>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도로법','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해설 및 지침,' <u>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u>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① 본 지침은 <u>도시·군계획시설중</u>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도로법','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해설 및 지침,' <u>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u>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II. 구절리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구절1	근린공원	여량면 구절리 276-8 일원	10,678	감)10,678	-	강고 제2008-27호 (2008.2.2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폐지	1	구절1 근린공원	◦ 폐지	◦ 소로2-1 도로변에 위치한 일부 공원부지의 해제로 인하여 접근성이 부족해지고, 해제후 잔여공원부지가 급경사지에 위치함에 따라 해당 근린공원을 폐지하여 경관녹지로 관리

(2)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여량면 구절리 산 205번지 일원	6,930	증)7,707	14,637	강고제2008-27호 (2008.2.22)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1	경관녹지	◦면적 증가 - A: 6,930→14,637㎡ (증 7,707)	◦ 구절1 근린공원의 일부 해제로 인하여 해제후 공원 면적이 근린공원 면적기준(1만㎡)에 미달 되고, 잔여 부지가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공원 조성이 부적절해짐에 따라 해당 근린공원을 폐지하여 경관녹지로 관리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	비고
			위치	변경면적(㎡)		
	계	158,683	-	158,683		
A	주거용지	74,416	구절리 290-12번지 일원	87,378	증) 12,962	
B	상업용지	3,577	구절리 290-82번지 일원	3,577	-	
C	녹지용지	31,730	구절리 산 205번지 일원	28,759	감) 2,971	
D	공공시설용지	48,960	구절리 290-10번지 일원	38,969	감) 9,991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 호		기정면적 (㎡)	획 지		증 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계		158,683	-	158,683		
A	주 거 용 지	74,416	구절리 290-12번지 일원	87,378	증) 12,962	
	A1 - 1	단독주택용지	5,549	구절리 산 244-1번지 일원	5,549	
	A1 - 2	단독주택용지	2,667	구절리 279-4번지 일원	2,667	
	A1 - 3	단독주택용지	3,087	구절리 280-2번지 일원	3,087	
	A1 - 4	단독주택용지	5,977	구절리 276-7번지 일원	5,977	
	A1 - 5	단독주택용지	11,530	구절리 277-34번지 일원	14,501	증) 2,971
	A1 - 6	단독주택용지	1,614	구절리 272-5번지 일원	1,614	
	A1 - 7	단독주택용지	4,447	구절리 266-19번지 일원	4,447	
	A1 - 8	단독주택용지	4,243	구절리 266-29번지 일원	4,243	
	A1 - 9	단독주택용지	3,766	구절리 266-2번지 일원	3,766	
	A1 - 10	단독주택용지	6,786	구절리 254-7번지 일원	6,786	
	A1 - 11	단독주택용지	4,305	구절리 252-6번지 일원	4,305	
	A1 - 12	단독주택용지	3,107	구절리 250-1번지 일원	3,107	
	A1 - 13	단독주택용지	-	구절리 278-1번지 일원	847	증) 847
	A1 - 14	단독주택용지	-	구절리 276-1번지 일원	9,144	증) 9,144
	A2 - 1	근린생활시설용지	2,561	구절리 290-57번지 일원	2,561	
	A2 - 2	근린생활시설용지	3,594	구절리 290-12번지 일원	3,594	
	A2 - 3	근린생활시설용지	2,547	구절리 282-6번지 일원	2,547	
	A2 - 4	근린생활시설용지	1,742	구절리 312-5번지 일원	1,742	
	A2 - 5	근린생활시설용지	2,279	구절리 290-3번지 일원	2,279	
A2 - 6	근린생활시설용지	2,520	구절리 290-34번지 일원	2,520		
A2 - 7	근린생활시설용지	2,095	구절리 281-9번지 일원	2,095		
B	상 업 용 지	3,577	구절리 290-82번지 일원	3,577		
	B1 - 1	상업용지	3,577	구절리 290-82번지 일원	3,577	
C	녹 지 용 지	31,730	구절리 산 205번지 일원	28,759	감) 2,971	
	C1 - 1	광 장	1,104	구절리 312-2번지 일원	1,104	
	C2 - 1	경관녹지	12,679	구절리 산 205번지 일원	20,386	증) 7,707
	C3 - 1	근린공원	10,678	구절리 276-8번지 일원	-	감) 10,678
	C3 - 2	어린이공원	2,898	구절리 272-1번지 일원	2,898	
	C3 - 3	어린이공원	1,861	구절리 273-3번지 일원	1,861	
	C3 - 4	어린이공원	1,570	구절리 252-1번지 일원	1,570	
	C3 - 5	소 공 원	690	구절리 266-1번지 일원	690	
C4 - 1	보행자전용도로	250	구절리 290-36번지 일원	250		
D	공 공 시 설 용 지	48,960	구절리 290-10번지 일원	38,969	감) 9,991	
	D1 - 1	도 로	33,284	구절리 290-10번지 일원	33,284	
	D2 - 1	주 차 장	1,202	구절리 278번지 일원	1,202	
	D2 - 2	주 차 장	1,354	구절리 284-6번지 일원	1,354	
	D2 - 3	주 차 장	758	구절리 268-1번지 일원	758	
	D3 - 1	하수종말처리장	762	구절리 290-1번지 일원	762	
	D4 - 1	공공청사	847	구절리 산 244-5번지 일원	-	감) 847
	D5 - 1	학 교	9,144	구절리 276-1번지 일원	-	감) 9,144
D6 - 1	소 하 천	1,609	구절리 산 219-2번지 일원	1,609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A1-5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면적 증가 - A: 11,530㎡ → 14,501㎡ (증 2,971㎡)	◦ 폐지되는 근린공원 중 도로(소2-1)에 접한 일부 지역을 단독주택용지로 반영
신설	A1-13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신설	◦ 공공청사에서 폐지되는 우체국 부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반영
신설	A1-14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신설	◦ 학교에서 폐지되는 부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반영
변경	C2-1(경관녹지)	◦경관녹지 면적 증가 - A: 12,679㎡ → 20,386㎡ (증 7,707㎡)	◦ 폐지되는 근린공원 중 급경사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경관녹지로 반영
폐지	C3-1(근린공원)	◦근린공원 폐지	◦ 민원, 지형 등 공원조성이 어려운 해당 근린공원 폐지
폐지	D4-1(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 구절우체국 이전에 따라 공공청사에서 폐지
폐지	D5-1(학교)	◦학교 폐지	◦ 2013. 3. 1. 자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 폐지 반영

Ⅲ. 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자동차정류장	-	화암리 396-1대 일원	990	감)990	-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폐지	1	자동차 정류장	◦ 폐지	◦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취락지구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해당시설 폐지

(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전기공급설비	화암리 365-1대 일원	150	감)150	-	강고제1994-107호 (1994.6.17)	집전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폐지	1	전기공급설비	◦ 폐지	◦ 현 토지이용(KT분기국사)을 반영한 방송·통신시설로 변경

(3) 방송·통신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방송·통신 시설	화암리 365-1대 일원	-	증)150	150	금회	

방송·통신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1	방송·통신 시설	◦ 신설	◦ 현 토지이용(KT분기국사)을 반영하여 종전 전기공급설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시설로 신설

(4)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소방서 분소	화암리 429-2답 일원	230	증)250	480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변경	2	공공청사	화암면 사무소	화암리 393-1대 일원	3,805	감)1,680	2,125	강고 제1994-107호 (1994.6.17)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1	공공청사	◦ 면적변경 : 230㎡ → 480㎡ (증 250㎡) ◦ 위치변경 : 화암리 409-6 일원 → 화암리 429-2 일원	◦ 정선소방서 화암119지역대 신축(2013.11.22.) 현황 반영
변경	2	공공청사	◦ 면적변경 : 3,805㎡ → 2,125㎡ (감 1,680㎡)	◦ 화암면사무소 복측에 포함된 사유 지를 공공청사에서 제척

(5)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하수종말처리장	화암리 429-2답 일원	480	감) 480	-	강고제1994-107호 (1994.6.17)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폐지	1	하수종말 처리장	◦ 폐지	◦ 타지역으로 이전 설치됨에 따라 해당 시설 폐지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총괄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계		222,468	-	222,468		
A	주거용지	69,734	화암리 426답 일원	72,634	증) 2,900	
B	상업용지	15,091	화암리 430-1답 일원	15,091		
C	공업용지	13,353	화암리 436-1전 일원	12,540	감) 813	
D	녹지용지	41,993	화암리 1114답 일원	42,806	증) 813	
E	공공시설용지	82,297	화암리 1114답 일원	79,397	감) 2,900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 호		기정면적 (㎡)	획 지		증 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계		222,468	-	222,468		
A	주 거 용 지	69,734		72,634	증) 2,900	
	A-1	주거용지	5,900	화암리 426답 일원	5,900	
	A-2	〃	2,942	화암리 427-2답 일원	2,942	
	A-3	〃	6,989	화암리 419-1답 일원	6,989	
	A-4	〃	4,890	화암리 418중 일원	5120	증) 230
	A-5	〃	2,526	화암리 413답 일원	2,526	
	A-6	〃	1,546	화암리 390답 일원	1,546	
	A-7	〃	2,468	화암리 441답 일원	4,148	증) 1,680
	A-8	〃	3,481	화암리 396대 일원	4,471	증) 990
	A-9	〃	5,400	화암리 383-2답 일원	5,400	
	A-10	〃	4,456	화암리 389답 일원	4,456	
	A-11	〃	537	화암리 388-2창 일원	537	
	A-12	〃	717	화암리 376-1대 일원	717	
	A-13	〃	460	화암리 372-2대 일원	460	
	A-14	〃	2,340	화암리 371-1대 일원	2,340	
	A-15	〃	2,396	화암리 375-1대 일원	2,396	
	A-16	〃	1,978	화암리 369-2대 일원	1,978	
	A-17	〃	2,356	화암리 1158대 일원	2,356	
	A-18	〃	4,118	화암리 381-4학 일원	4,118	
	A-19	〃	299	화암리 352-29전 일원	299	
	A-20	〃	1,348	화암리 352-13대 일원	1,348	
	A-21	〃	1,855	화암리 352-18대 일원	1,855	
	A-22	〃	4,421	화암리 366대 일원	4,421	
	A-23	〃	1,239	화암리 398전 일원	1,239	
A-24	〃	5,072	화암리 396-11전 일원	5,072		

도 면 번 호	기정면적 (㎡)	획 지		증 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B	상 업 용 지	15,091	-	15,091			
	B-1	상업용지	2,274	화암리 430-1답 일원	2,274		
	B-2	〃	1,224	화암리 432-4답 일원	1,224		
	B-3	〃	2,893	화암리 401-1답 일원	2,893		
	B-4	〃	1,165	화암리 374-10대 일원	1,165		
	B-5	〃	2,028	화암리 373-2대 일원	2,028		
	B-6	〃	1,585	화암리 356-13전 일원	1,585		
	B-7	〃	158	화암리 356-8차 일원	158		
	B-8	〃	2,151	화암리 361-10대 일원	2,151		
	B-9	〃	1,613	화암리 361-34대 일원	1,613		
C	공 업 용 지	13,353	-	12,540	감) 813		
	C-1	공업용지	5,112	화암리 436-1전 일원	5,112		
	C-2	〃	3,318	화암리 433답 일원	3,318		
	C-3	〃	4,110	화암리 432-3답 일원	4,110		
	C-4	〃	813	화암리 산212-4임 일원	-	감) 813	
D	녹 지 용 지	41,993	-	42,806	증) 813		
	D-1	녹지 ①	9,794	화암리 435-1답 일원	10,607	증) 813	
	D-2	녹지 ②	1,818	화암리 1306천 일원	1,818		
	D-3	녹지 ③	17,367	화암리 1306천 일원	17,367		
	D-4	녹지 ④	944	화암리 1306천 일원	944		
	D-5	녹지 ⑤	6,854	화암리 325-4전 일원	6,854		
	D-6	수변공원 ①	5,216	화암리 1114답 일원	5,216		
E	공 공 시 설 용 지	82,297	-	79,397	감) 2,900		
	E-1	공공청사 ①	230	화암리 429-2답 일원	480	증) 250	소방서분소
	E-2	공공청사 ②	5,485	화암리 393-1대 일원	3,805	감) 1,680	면사무소
	E-3	공공청사 ③	430	화암리 376-5대 일원	430		우체국
	E-4	공공청사 ④	1,120	화암리 372-3대 일원	1,120		보건지소
	E-5	공공청사 ⑤	1,250	화암리 358-1대 일원	1,250		지구대
	E-6	학교 ①	7,860	화암리 386학 일원	7,860		화동중학교
	E-7	학교 ②	8,820	화암리 380학 일원	8,820		화동초등학교
	E-8	문화시설 ①	540	화암리 352-2대 일원	540		마을회관
	E-9	전기공급설비 ①	150	화암리 365-1대 일원	-		KT분기국사
		방송·통신시설 ①	-	화암리 365-1대 일원	150		
	E-10	자동차정류장 ①	990	화암리 396-1대 일원	-	감) 990	폐지
	E-11	하수종말처리장 ①	480	화암리 429-2답 일원	-	감) 480	폐지
	E-12	도로	47,867	화암리 394-1도 일원	47,867		
E-13	주차장 ①	7,075	화암리 391-3답 일원	7,075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A-4(주거용지)	◦ 면적변경 : 4,890㎡ → 5,120㎡ (증 230㎡)	◦ 종전 공공청사(정선소방서) 부지를 주거용지로 반영
변경	A-7(주거용지)	◦ 면적변경 : 2,468㎡ → 4,148㎡ (증 1,680㎡)	◦ 공공청사(면사무소) 부지 북측에 포함된 사유지를 주거용지로 반영
변경	A-8(주거용지)	◦ 면적변경 : 3,481㎡ → 4,471㎡ (증 990㎡)	◦ 종전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주거용지로 반영
변경	C-4(공업용지)	◦ 면적변경 : 813㎡ → 0㎡ (감 813㎡)	◦ 공업용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435-1 일원을 녹지로 변경
변경	D-1(녹지)	◦ 면적변경 : 9,794㎡ → 10,607㎡ (증 813㎡)	◦ 공업용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435-1 일원을 녹지로 변경
변경	E-1(공공청사)	◦ 면적변경 : 230㎡ → 480㎡ (증 250㎡) ◦ 위치변경 : 화암리 409-6 일원 → 화암리 429-2 일원	◦ 정선소방서 화암119지역대 신축 (2013.11.22.) 현황 반영
변경	E-2(공공청사)	◦ 면적변경 : 5,485㎡ → 3,805㎡ (감 1,680㎡)	◦ 공공청사(면사무소) 부지 북측에 포함된 사유지를 공공청사에서 제척
변경	E-9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 방송통신시설	◦ 현 토지이용(KT분기국사)을 반영하여 종전 전기공급설비를 방송통신시설로 변경
폐지	E-10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폐지	◦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취락지구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해당시설 폐지
폐지	E-11 (하수종말처리장)	◦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 타지역으로 이전 설치됨에 따라 해당시설 폐지

IV. 사북 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	10	집산 도로	240	직전리 586-4	직전리 571-3	일반 도로		강고 제2009-285호 (2009.8.21.)	
변경	소로	1	5	10	집산 도로	246	직전리 586-4	직전리 571-3	일반 도로		강고 제2009-285호 (2009.8.21.)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402	직전리 572	직전리 613	일반 도로		강고 제2009-285호 (2009.8.21.)	
변경	소로	2	18	8	국지 도로	391	직전리 572	직전리 613	일반 도로		강고 제2009-285호 (2009.8.21.)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소로 1-5	소로 1-5	◦ 노선변경 - L=240m → 246m 증) 6m	◦ 기정 계획대로 도로개설시 586-2번지가 3필지로 분할되어 토지가치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노선변경
변경	소로 2-18	소로 2-18	◦ 노선변경 - L=402m → 391m 감) 11m	◦ 기정 계획도로 부지에 위치하는 200년 이상된 고목의 보존을 위하여 노선 변경

(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노외 주차장	직전리 586-1번지 일원	1,392	감)246	1,14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③	노외주차장	◦ 면적 변경 - A= 1,392㎡ → 1,146㎡ 감) 246㎡	◦ 소로1-5의 노선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⑭	녹지	경관 녹지	직전리 576번지 일원	10,079	증)52	10,131	강고제285호 (2009.8.21)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⑭	경관녹지	◦ 면적변경 - 10,079㎡ → 10,131㎡ 증) 52㎡	◦ 소로1-5 및 소로2-18의 노선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4)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폐지	3	하 천 (서부랑천)	소하천	직전리 613번지	직전리 613번지	직전리 377번지	0.22	최소:10m 최대:10m	2,490	강고 제2009-285호 (2009.8.21.)	
폐지	4	하 천 (배래치천)	소하천	직전리 584-3번지	직전리 567-1번지	직전리 560-1번지	0.50	최소: 7m 최대: 8m	3,764	강고 제2009-285호 (2009.8.21.)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폐지	3	하 천 (서부랑천)	◦ 폐지	◦ 직전지구 및 강원랜드지원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소하천 폐지
폐지	4	하 천 (배래치천)	◦ 폐지	◦ 직전지구 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소하천 폐지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계		636,670		636,670	-	
A	주거용지	334,355	사북읍 직전리 372번지 일원	334,352	감)	3
B	상업용지	15,915	사북읍 직전리 548번지 일원	15,915	-	변경없음
C	녹지용지	145,449	사북읍 직전리 613번지 일원	145,801	증)	52
D	공공시설용지	140,951	사북읍 직전리 541번지 일원	140,951	감)	49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도 면 번 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A	A3-4	근린생활시설 용지	14,533	사북읍 직전리 572번지 일원	14,551	증)	18
	A3-5	근린생활시설 용지	24,225	사북읍 직전리 569번지 일원	23,795	감)	430
	A3-7	근린생활시설 용지	9,088	사북읍 직전리 554-2번지 일원	9,134	증)	46
	A3-8	근린생활시설 용지	11,459	사북읍 직전리 592번지 일원	11,556	증)	97
	A3-9	근린생활시설 용지	5,592	사북읍 직전리 586번지 일원	6,197	증)	605
	A3-10	근린생활시설 용지	5,175	사북읍 직전리 584-1번지 일원	4,836	감)	339
C	C1-14	경관녹지	10,079	사북읍 직전리 576번지 일원	10,131	증)	52
D	D1-1	도 로	128,756	사북읍 직전리 529-6번지 일원	128,953	증)	197
	D2-3	주차장	1,392	사북읍 직전리 586-1번지 일원	1,146	감)	246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A3-4(근린생활시설용지)	◦ 면적변경 : 14,533㎡ → 14,551㎡ (증 18㎡)	◦ 소로1-5, 소로2-18의 노선변경에 따른 해당도로 주변에 위치하는 가구 및 획지의 면적 변경 반영
변경	A3-5(근린생활시설용지)	◦ 면적변경 : 24,225㎡ → 23,795㎡ (감 430㎡)	
변경	A3-7(근린생활시설용지)	◦ 면적변경 : 9,088㎡ → 9,134㎡ (증 46㎡)	
변경	A3-8(근린생활시설용지)	◦ 면적변경 : 11,459㎡ → 11,556㎡ (증 97㎡)	
변경	A3-9(근린생활시설용지)	◦ 면적변경 : 5,592㎡ → 6,197㎡ (증 605㎡)	
변경	A3-10(근린생활시설용지)	◦ 면적변경 : 5,175㎡ → 4,836㎡ (감 339㎡)	
변경	C1-14(경관녹지)	◦ 면적변경 : 10,079㎡ → 10,131㎡ (증 52㎡)	
변경	D1-1(도로)	◦ 면적변경 : 128,756㎡ → 128,953㎡ (증 197㎡)	
변경	D2-3(주차장)	◦ 면적변경 : 1,392㎡ → 1,146㎡ (감 246㎡)	

V. 남평 휴양단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남평 휴양단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평면 남평리 1350-1 일원	78,629	감)17,913	60,716	정선고 제50호 (1999.6.1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6	남평 휴양단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 A: 78,629㎡ → 60,716㎡ (감 17,913㎡)	◦ 사업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 반영 (구적오차 정정)

VI. 남평 문화마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남평 문화마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평면 남평리 1305 일원	55,000	감)8,158	46,842	정선고 제64호 (1999.7.2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7	남평 문화마을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 A: 55,000㎡ → 46,842㎡ (감 8,158㎡)	◦ 사업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 반영 (구적오차 정정)

정선군고시 제2016-56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정 선 군 수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용

시 설 명	소 재 지	보호구역지정구간 (m)	비 고
정선유치원	정선군 와평2길 11(신월리 754-1)	시설정문앞 도로 20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교통행정부서 (033-560-236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6-546호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0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관내 일원
3.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도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각 읍·면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16. 6. 20. ~ 2016. 7. 5.)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서면 제출,
열람 기간내
8.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람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